

1. 개정이유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관련 규정이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관리 관련 조항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관리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16조 삭제)

- 1) 현행 검사기관의 지정관리는 동 규칙상에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

나. 니켈항목 검사에 따른 수수료 기준 추가(안 제15조 별표4)

- 1) 인증, 인증의 변경, 정기검사시 제품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의 시험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을 받아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2) 시험항목에 니켈이 추가됨에 따라 니켈항목의 시험분석에 따른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및 인증의 취소”를 “방법·절차,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3중 2호다목중 “가항”을 “나목”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제15조 관련)

1. 인증 신청 수수료

- 가.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생산지의 다른 제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건당 25만원으로 한다.
- 나.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 다. 신규인증(제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를 포함한다), 정기검사, 인증의 변경신청 시 인증신청 수수료는 모두 같다.

2. 공장심사 수수료

가. 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용한다.
- 3) 인증을 받으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별도 일정의 시료채취를 할 경우 인증심사원에 대한 심사비(수당, 여비, 교통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심사수당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산업공장부분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2)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이동 일수의 2분의 1을 추가로 적용한다.
- 3) 심사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3.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前)처리 비용

품 목		수수료(원)	비 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분류에 따른 전처리 비용	관류, 밸브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및 기타 수도용 제품 등	300,000	
	말단급수설비(수도꼭지류)	774,000	
	표충용 재료(용제 포함)	3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試片) 제작상태
	표충용 재료(용제 미포함)	100,000	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편 제작상태

비고: 분석을 의뢰한 자의 요청에 따라 컨디셔닝을 생략한 경우(세척, 용출시험만 시행)에는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나. 시험분석 비용

분석 항목	수수료(원)	분석 항목	수수료(원)
카드뮴	30,000	색도	10,000
수은	23,000	탁도	10,000
셀레늄	30,000	잔류염소의 감량	15,000
납	30,000	2,4 톨루엔디아민	59,000
비소	30,000	2,6 톨루엔디아민	59,000
니켈	30,000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70,000
6가 크로뮴 {chromium(6+)}	20,000	사염화탄소	60,000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27,000	아세트산비닐	45,000
시안	30,000	스티렌	45,000
플루오린(불소, fluorine)	20,000	1,2-부타디엔	45,000
아연	20,000	1,3-부타디엔	45,000
철	20,000	N,N-디메틸아닐린	45,000
구리	20,000	1,2-디클로로에탄	45,000
나트륨(소듐, sodium)	20,000	1,1-디클로로에틸렌	45,000
망가니즈(망간, manganese)	20,000	1,1,2-트리클로로에탄	45,000
염소이온	15,000	트리클로로에틸렌	45,000
증발잔류물	31,000	벤젠	45,000
음이온계면활성제	93,000	에피클로로히드린	45,000
페놀류	15,000	디클로로메탄	45,00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5,000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45,000
맛	5,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5,000
냄새	10,000	1,1,1-트리클로로에탄	45,000

다. 가목과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인증서 재발급 및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

가.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나. 영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및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방법·절차, 수수료, 인증의 표시방법 ----- ----- ----- -----
제16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위생안전기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수도사업자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외한다.	<삭 제>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
· 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